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경태의원 발의)

의 안 번호 5689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 장경태 의원

찬 성 자:169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어왔음. 작금에 이르러 민주체제로 전환이되었으나, 과거 억압적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공소시효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공범자에게도 해당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3조).
-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 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적 용을 배제함(안 제4조).
- 라.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소멸시효 특례에는 피해자 본인의 경우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법률 제 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이 법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 1.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 2.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의 죄를 통하여 사람을 의사의 최초진단결과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한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제62조의 죄를 통하여 사람을 의사의 최초진단결과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4.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 가. 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 인멸하거나 감정인으로 하여금 허위 감정하게 한 경우
- 나. 위조. 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경우
- 다.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 또는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라. 「형법」 제152조의 죄를 범한 경우
-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②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소시효 특례의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소멸시효 특례의 소급적용) ①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